

비
부

시스템 통합 계약서

계약명	(주)아이피에스 uniERP 시스템 구축
계약금액	일금 이억삼천만원정 (₩ 230,000,000, VAT 별도)
계약기간	2005. 07. 20 - 2005. 12. 19 31 이종한 SBS uniERP A608
이행(납품) 장소	(주)아이피에스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1일 해당금액에 대한 을의 지급
기타사항	1. 삼성전자 SCM 연계 포함 (단, 구축일자는 삼성전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2.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주요사항(조직변경 등) 발생시 별도 협의 함.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시스템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불임서류 1. 일반조건 1부
 2. 과업내역서 1부
 3. 대금지급계획서 1부
 4. 견적서 1부

2005년 7월 8일

“갑”	“을”
京畿道 平澤市 芝制洞 33 (株)아이피에스 代表理事 張 鎬 承 	회사명 :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19 대표자 : 대표이사 김

시스템 통합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시스템통합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한다)은 을이 갑을 위해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은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다.

제 2 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 을이 과업내역서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장비 : H/W, 기계, 구성요소, 부품, 액세서리 등
3. 소프트웨어 : 패키지 S/W, 응용 S/W, 프로그램, 기타 무형물을 총칭한다.
4. 제3자 소프트웨어 : 제3자가 원저작권을 갖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5. 컴퓨터 시스템 :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응용 데이터 베이스 및 기타 지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일체를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이라고만 한다.
6. 계약성과물 : 본 계약에 근거해 새로이 개발 또는 산출되는 시스템 및 이를 이루는 개개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컨텐츠 데이터베이스류 기타 이에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의 유무형물을 모두 총칭한다.
7. 매뉴얼 : 인간의 언어나 기계언어 형식 또는 어떠한 매체로 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패키지 및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과 사용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단, 특정한 데이터모델이나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자료는 매뉴얼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3 조 【계약의 구성】

본 계약은 계약서, 일반조건, 과업내역서, 대금지급계획서, 기타 계약서상 붙임서류로 구성된다. 각 계약서류의 조건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상 나열된 순서로 그 효력이 우선한다.

제 4 조 【을의 서비스 제공 의무】

- ① 을은 갑에게 '과업내역서'에 정한 범위에서 시스템 통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5 조 【대금지급】

- ① 갑은 을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대금을 대금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한다.
- ② 갑이 대금지급계획서에 명시된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을의 주거래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다.

제 6 조 【계약의 변경】

- ① 각 당사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서비스의 추가, 서비스 범위 변경, 기타 본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변경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합리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위 요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범위 기타 변경내용의 기술
 - 2.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겸수, 인수조건 기타 계약조건에 미치는 영향
- ③ 계약내용 변경시,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대금 또는 계약기간을 조정한다.
- ④ 모든 계약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면승인 해야 한다. 서면 변경합의가 없는 채, 을이 갑이 요구한 추가 또는 변경 서비스를 수행한 경우 을은 변경요청 전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한 추가 또는 변경 서비스 수행 대가를 지급 받는다.

제 7 조 【보증】

-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장비는 원제조업체가 보장한 성능 및 기능 기타 보증 내용과 일치한 상태로 갑에게 제공함을 보증한다.
- ②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적재산권이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갑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경우 을을 포함하여 원저작권자가 부여한 라이센스 조건 및 보증조건과 일치한 상태로 갑에게 제공함을 보증한다.
- ③ 상기 ①항 및 ②항의 보증은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포함하여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대신한다.

제 8 조 【기밀보호】

- ①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중 및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 이후 2년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관련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일방이 타방에 기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현재 또는 장래에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표, 저작 또는 특허에 따른 여하한 권리 또는 사용권을 타방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제 9 조 【지적재산권】

- ① 본 계약체결 이전에 각 당사자가 작성, 개발한 각종 S/W, 프로그램, Tool, Document, 방법론 등 각자의 기존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각 당사자에게 유보된다. 다만, 본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요한 범위에서 각자 무상의 사용권을 갖는다.
- ② 본 계약에 의한 계약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다만, 갑은 을에게 제5조에 의한 계약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갑의 내부사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성과물의 사용, 복제, 배포할 수 있는 영구적·전세계적·비독점적·무상의 사용권을 부여 받는다.
- ③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제3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에는 갑 및 을은 그 취급에 대하여 협의하고, 갑 또는 을과 당해 제3자간에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로 인한 문제 또는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제10조와 관계없이, 당해 제3자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관한 계약에 근거해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 ④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상대방의 상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 10 조 【을의 갑에 대한 방어의무】

- ①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인도한 계약성과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가 있는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갑을 방어하고,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른 배상금(합리적인 범위의 변호사 비용 포함) 또는 을이 승인한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배상한다.

- ② 다음 각호의 경우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조에서 정한 을의 방어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 1. 갑이 계약성과물을 을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제공한 시스템, 장치,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와 함께 사용한 경우
 - 2. 을이 갑이 제공한 H/W, S/W, 프로그램의 디자인, 사양 등의 유무형물을 이용하여 개발한 경우 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수정, 개작, 변형한 경우
 - 3.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성과물을 수정, 개작 또는 변형한 경우

제 11 조 【갑의 협력의무】

- ① 갑은 본 계약상 을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데이터, 정보 등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본 계약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상 을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갑의 사무소 등에서 을이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갑은 당해 작업실시장소(당해 작업실시장소에 있어서 필요한 기기, 설비 등 작업환경을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한다.
- ③ 갑은 을의 본 계약상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 이행의 전제가 되는 타공사, 타시스템 구축, 기타 타계약사항 및 준비사항을 미리 완성하여 을이 적기에 서비스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갑이 본조에 의하여 협력하여야 할 제반사항의 잘못 및 지연으로 인하여 본건 서비스 제공이 지체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면한다.

제 12 조 【검수】

- ① 을은 본 계약상 과업내역서에 정한 서비스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갑은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갑이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검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갑이 전항의 검수 결과 계약이행내용이 검수조건에 위반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갑이 제②항의 기간내에 서면으로 검수결과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에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3 조 【손해배상】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분실 또는 손상, 영업기회 및 기대했던 이익의 상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 한다.
- ③ 을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배상할 일체의 손해배상액 총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제 14 조 【지체상금】

-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한내에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지체된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의 지체된 부분이란 '검수완료된 기성부분, 갑이 이미 관리사용하고 있는 부분 및 객관적으로 갑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갑이 즉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을 완료한 부분'(이하 '기완료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①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본 계약상 의무이행 착수가 지연되거나 의무이행이 중단된 경우
 3. 제12조에 의한 검수에 소요된 기간 및 제12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4. 기타 양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제 15 조 【하자보증】

- ① 을은 과업내역서에 명시된 하자보증기간 동안 계약성과물의 기능, 성능 및 품질이 과업내역서와 동일함을 보증한다.
- ② 을은 계약성과물,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원제조자, 원저작권자, 공급자가 보장한 사항 및 부여한 조건, 보증 내용의 범위내에서 하자를 치유함을 보증한다.
- ③ 본 조에 따른 보증은 다음의 사항으로 인한 하자 또는 보증의 불일치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1. 을 또는 제조업체, Lessor, 공급업체의 승인없이 갑 또는 제3자가 시스템 또는 계약성과물을 수정, 변경 또는 유지보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을이 제공하지 않은 시스템 또는 기계 또는 프로그램등과의 연계 또는 연동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3. 시스템 또는 자료의 명시된 가동여건 또는 운용요건 기타 매뉴얼과 다르게 해당 시스템 또는 계약성과물을 사용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을의 동의 없이 시스템을 이동시키거나 전산환경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애가 발생함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 16 조 【불가항력】

-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파업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본 계약상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 ② 위 ①항의 경우 양 당사자는 기완료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이행부분에 대하여 상호 권리 및 책임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즉시 손해의 축소 등을 위한 조치에 착수하는 외에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소유권 및 위험의 이전】

- ① 하드웨어, 장치, 기타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때 갑에게 이전된다.
- ② 장비 기타 유형물이 갑에게 인도된 후에 을의 과실 없이 당해 유형물이 분실 및 파손된 경우, 갑은 해당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제 18 조 【해지】

- ①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의 부도, 은행거래 정지, 파산, 화의, 워크아웃 또는 회사정리 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2. 일방이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거처분, 소송, 경매등의 강제집행을 당하여 사실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정요구기간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일방의 귀책사유로 사업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100를 초과한 경우
-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해지시까지 기완료부분을 갑에게 제공하고, 갑은 을이 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 19 조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의 수행 중 양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즉시 본 계약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후 제①항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③ 제②항에 의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④ 본 계약 및 관계내역서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양 당사자간의 완전하고도 유일한 합의를 이루며, 이전의 모든 서면 또는 구두 합의를 대신한다.

II. 과업내역서

1. 과업의 목표 및 범위

구분	목표 및 범위
ERP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RP 시스템 구축<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 관리 (수출 관리 포함)- 생산 관리- 구매 관리 (수입 관리 포함)- 재고 관리- 품질 관리- 회계 관리- 인사/급여 관리- 원가 관리- 경영손익 관리- 기준 정보 관리 (Basis Architect)◎ 경영자정보(EIS) 관리 구축◎ Project 관리 구축◎ 삼성전자 SCM (GLONETS)과 연계시스템 구축◎ 기존 PDM 및 SCM 과 I/F◎ uniERP Customizing 범위는 계약의 개발 MM 능력 범위 안에 속하는 개발 제공.(개발 표준 능력 : 입력처리화면 : 5본/MM, 조회/보고서 : 7본/MM)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과업내역서에 표시된 내용외는 2005년 7월 6일 제공한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함.

2. 과업 범위 조정

- 과업 범위 조정은 갑과 을의 공식적인 합의에 의하여 하며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 범위 외 과업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사업변경을 통해 조정한다.

3. 과업의 기간 및 일정

○ 2005. 7. 20 ~ 2005. 12. 19 (5개월)

이종한
성장하는
SAP ERP 시스템,

12. 31

구분	2005년					
	M	M+1	M+2	M+3	M+4	M+5
진행 단계	착수 • 착수 준비 • 계획 수립 • 계획 확정	요구분석 • 교육 수행 • 적용 업무 분석 • 패키지 외 업무 분석	패키지 시뮬레이션 • 기준정보작용 • 고객검증 • 단계결과정리 • 고객승인 • 설계	구현 • 시범가동 • 개발 테스트	완료 • 본 가동 • 결산확인	유지보수 • 완료 확인 • 완료 보고 • 행정 종료 • 안정화
주요 Event	▲ 착수 보고회			▲ 중간 보고회		▲ 완료 보고회
주요 산출물	• 프로젝트계획서 • 착수보고서	• Master Data 점검LIST • GAP 대응방안목록 • 신규프로세스정의서	• 기초 데이터 • 운영점검LIST • 개별인수확인서	• 사용자매뉴얼 • 운영자매뉴얼 • 프로젝트산출물 LIST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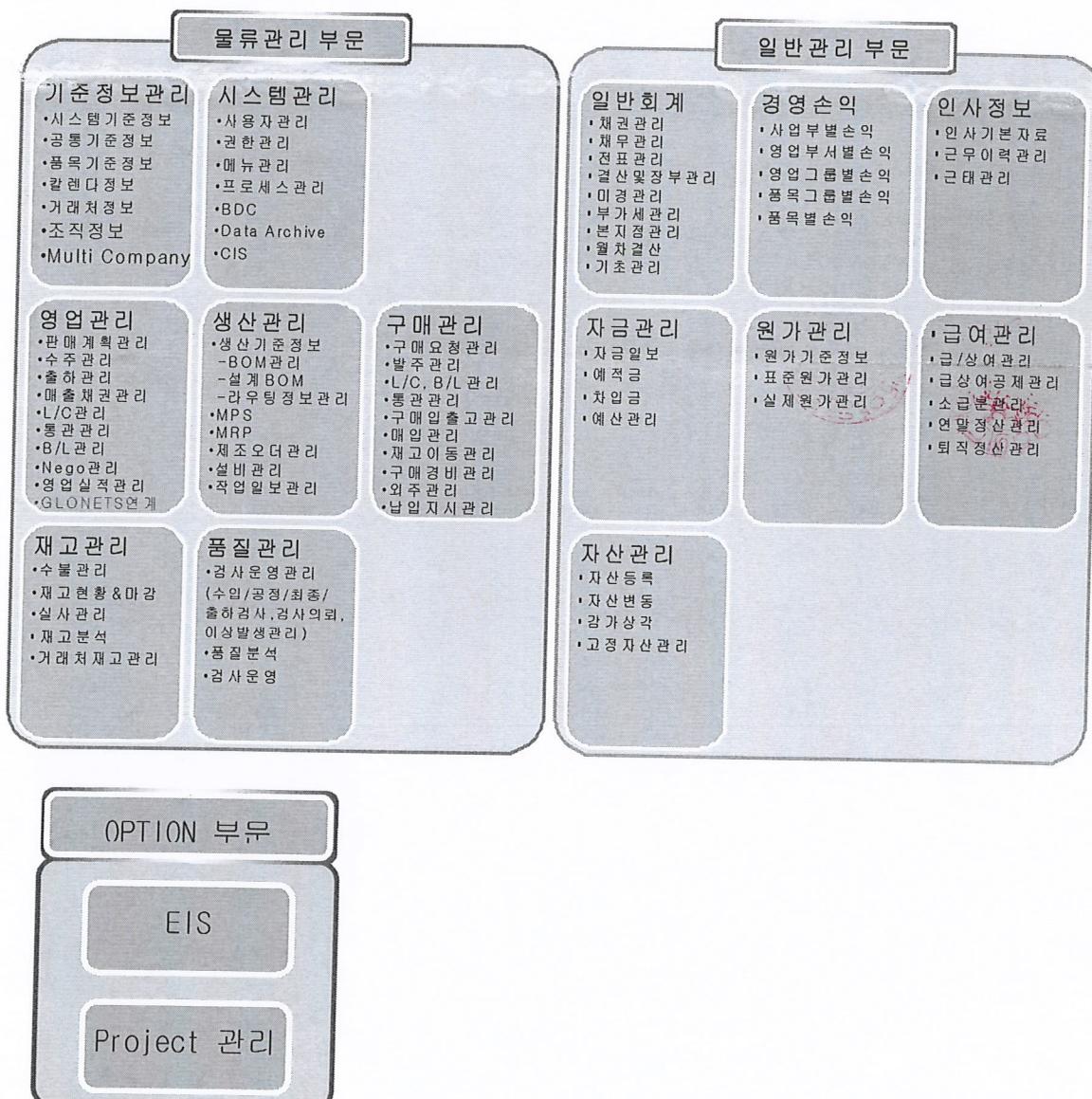


한국은행
한국은행

4. 과업의 내용

1) ERP 시스템 구성

ERP시스템은 (주)아이피에스가 수행하는 업무의 전자적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적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스템의 구성은 uniERP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으로 (주)아이피에스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기타

삼성SDS주식회사는 금번 uniERP 구축 프로젝트 착수후 8개월이내 (구축 계약 기간(5개월)+3개월)이내 (주)아이피에스에서 uniERP 패키지의 License(대사우 관리등 옵션모듈 포함)를 추가 구매시 소비자가의 50% 금액으로 공급한다.



III. 대금지급계획서

1. 계약금액: 총 이억삼천만원정 (₩ 23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금액의 상세내용은 '붙임서류 4. 견적서'를 참조한다.
 3. 계약금액에 대한 "갑"의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착수금 : ₩ 69,000,000원(VAT 별도)
(착수보고서후 10일이내 세금계산서 발급)
 - 2) 중도금 : ₩ 69,000,000원(VAT 별도)
(중간보고후 10일 이내 세금계산서 발급)
 - 3) 잔 금 : ₩ 92,000,000원 (VAT 별도)
(완료보고후 10일 이내 세금계산서 발급)
- * 각 공히 세금계산서 발급일 기준 30 일 이내에 현금 지급한다.

전자적자원관리(ERP) 견적서

NO	
견적일	2005년 7월 7일
(주)아이피에스	귀하

상 호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10-81-28774
사 업 장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19
대 표 자 성 명	김 인
전 화 번 호	02-6484-1433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견적 유효 기간은 견적일로부터 30일입니다.

(단위: 원,VAT별도)

NO	품 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VAT	거래 금액
1	uniERP V Version	식	1	74,000,000	74,000,000		
2	컨설팅 & 개발비	식	1	205,000,000	205,000,000		
3	협력사특별할인				-49,000,000		
4	- 이하여백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합계			230,000,000	-	-
----	--	--	-------------	---	---

* 견적문의 : 이종한 과장(02-6484-0345)

1. uniERP V. Version

(단위: 원,VAT별도)

NO	품 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VAT	거래 금액
1	Basic						
2	인사급여	20user	1	5,000,000	5,000,000		
3	회계	20user	1	7,000,000	7,000,000		
4	영업	20user	1	7,000,000	7,000,000		
5	생산	20user	1	8,000,000	8,000,000		
6	구매/자재	20user	1	7,000,000	7,000,000		
7	품질	20user	1	5,000,000	5,000,000		
8	원가	20user	1	7,000,000	7,000,000		
9	기준정보	20user	1	4,000,000	4,000,000		
10	Option						
11	Project 관리	20users	1	14,000,000	14,000,000		
12	EIS(경영자정보)		1	10,000,000	10,000,000		
13	- 이하여백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합계				74,000,000	74,000,000	-	-
----	--	--	--	------------	------------	---	---

2. 컨설팅 & 개발비

No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단위) VAT
1	PM	M/M	2.5	12,000,000	30,000,000	
2	고급기술자(컨설팅)	M/M	10.0	8,500,000	85,000,000	
3	중급기술자(개발)	M/M	12.0	7,500,000	90,000,000	
4	- OI 하여백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합계					205,000,000	-

* 프로젝트 기간 : 5 개월